

등록번호	환경과-11581
등록일자	2016.5.2.
결재일자	2016.5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맑은대기팀장	환경과장	환경도시국장
하동규	권선상	조도영	05/02 황도현
협 조			

대기질 개선을 위한
2016년 운행차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계획



서 대 문 구
 환경과

대기질 개선을 위한

2016년 운행차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계획

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맑고 쾌적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(운행차의 수시점검)
 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(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)
 -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4-50호)
-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(공회전의 제한)
 -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(제5659호, ' 14.1.19)

II 추진방향

- 지속적인 운행차 수시점검을 통한 매연저감 및 대기질 개선 노력
-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등 차량 밀집지역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- 신속한 매연신고 차량 이첩, 개선권고 조치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

III 추진계획

-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
 - 추진기간 : 2016. 5월 ~12월
 - 추진목표 : 9,600대

- 점검대상 : 운행중인 경유차
- 점검인력 및 장비 : 4명(직원1, 사회복지무원3, 비디오카메라 등)
- 점검장소 : 독립문고가 등
- 점검방법
 - 주 3회(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측정)
 - 점검절차



- 결과조치
 - 매연 2도 이상 차량 선별, 개선권고 안내문 발송 및 관리

※ 배출가스 점검 불가 기상조건

- ▶ 비 또는 눈이 오거나, 풍속이 10m/sec 이상인 때
- ▶ 온도 -5℃ 미만이거나 40℃이상인 때에는 제외

□ 자동차 공회전 단속

- 추진기간 : 2016. 5월~12월
- 추진목표 : 960대
- 점검대상 : 관내 공회전 중인 모든 자동차
- 점검인력 : 4명(직원1, 사회복지무원3)
- 공회전 허용시간

	~ 0℃	0~5℃	5~25℃	25~30℃	30℃ ~
현기준	공회전허용	5분	2분	5분	공회전허용

- 제한장소 : 서울시 전지역
 - 중점제한장소 : 주차장, 차고지, 학교, 환경위생정화구역, 공회전 제한표지판 부착장소

○ 점검방법 : 주 2회

- 공회전 자동차 발견 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 후 단속
 - 운전자 미탑승시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즉시 측정 및 단속 가능
-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시 확인서 작성 및 과태료(5만원) 부과
- 단속절차



- ※ 중점제한지역(차고지, 주차장 등)은 경고없이 단속가능
- ※ 기온이 영하 -1°C 이하, 영상 30°C 이상일 경우 홍보 실효성이 낮아 미 실시

〈 2015년도 추진실적 〉

-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추진실적 : 점검 5,817대, 권고 145대
-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계도 : 계도 및 홍보 752대
- 매연신고(120, 서면 등) 처리 현황 : 자체처리 191대 , 이첩 112대